

법정서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사태' 이번주 첫 재판

펀드 부실화 가능성 인지하고도 판 혐의 투자자 370여명 펀드 판매...1348억 피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디스커버리 투자 본부장 A씨와 운용팀장 B씨, 법인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된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2017년 8월께 조세 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역면가에 매수해 디스커버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했다고 한다.

2018년 10월께 대출채권을 실시한 결과 대출채권 대부분이 70% 손실이 났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 달러 가운데 4000만불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장 대표는 2018년 10월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국내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으나 해당 펀드가 전부 환매 중단돼 피해를 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아울러 장 대표는 2019년 3월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후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해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되자 장 대표의 출국금지과 함께 판매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지난해 8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4일 장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최이슬기자



야외서 더위 피하는 제주 시민들

장마전선이 소강상태에 놓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16일 오후 제주도 도남동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이 더위를 피해 야외로 나온 시민들 북적이고 있다.

강진서 음주운전 화물차가 승용차 들이받아...6명 경상

17일 오전 1시 42분께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외국인 노동자 A(36)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마주 오던 B(60·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탑승자 2명과 승용차 탑승자 4명 등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진=김열일기자

'뇌염 영아 치료 소홀로 사지마비' 의사 항소심 기각...2심도 무죄

뇌염 증상이 있는 영아에게 해열제만 투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 A(43)씨와 간호사 B(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과 범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B씨는 2015년 9월 18일 뇌염 증상으로 전남 한 지역 여성아동병원에 입원한 영아 C양(당시 생후 48일)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뇌수막염, 사지 마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C양에게 해열제만 투여한 채 다른 치료 방법을 찾지 않았고 충분한 문진을 통해 C양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점, B씨가 C양의 증상을 A씨에게 적기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C양의 증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서도 과실과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

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C양에게 다른 처치를 했더라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상태가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C양이 아동병원 입원 사흘째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고열 외에 바이러스성 뇌염 증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정황을 보이지 않았던 점, 추후 각종 검사에서도 뇌염의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C양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우선 투입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학병원 의료진이 C양에게 포진 계열의 바이러스성 뇌염에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입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나흘 만에 약물 투여를 중단한 점에 비춰 A씨가 미리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했어도 C양의 상태 악화를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1심은 또 뇌염이 의심된다고 항상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뇌관류 유지, 경련 조절 등 대응요법이 우선 시행돼야 하는 점, A·B씨가 뇌염 의심 정황을 보이지 않은 C양에게 보존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증명

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운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